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2 . 1 0 . 6 . (목)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91
발의일자 : 2022. 09. 23.
회부일자 : 2022. 09. 2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용현 의원 외 16명

2. 제안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체육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도지사가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해당부서)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9월 28일 ~ 10월 4일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보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운영비 지원 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였으며, 운영비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18조(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u>보조</u>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 ----- ----- ----- 지원 <u>해야 한다.</u>
1. <u>상근직원 인력운영비</u>	1. <u>인건비</u>
2. <u>관서운영 기본경비</u>	2. <u>사무관리비</u>
3. <u>사무시설 임차료</u>	3. <u>임차료</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운영비 지원 항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종합 의견

-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이루어 졌고¹⁾, 출범당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회에서 2022. 2.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2022.8.11. 시행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경상북도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1) 지난 2018년 12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고,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렸음. 이에,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는 동법 개정안이 시행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1. 경상북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현황
2. 경상북도체육진흥협의회 현황

□ 운영비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천원)

년도	구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2022년	계	3,133,000	2,740,429	263,071	129,500
	도체육회	2,223,000	1,904,001	234,099	84,900
	장애인체육회	910,000	836,428	28,972	44,600
2021년	계	2,969,000	2,591,959	259,281	117,760
	도체육회	2,089,000	1,777,917	235,343	75,740
	장애인체육회	880,000	814,042	23,938	42,020
2020년	계	2,522,000	2,109,557	267,703	144,740
	도체육회	1,689,000	1,339,759	248,001	101,240
	장애인체육회	833,000	769,798	19,702	43,500
2019년	계	2,950,000	2,567,063	233,497	149,440
	도체육회	2,200,000	1,891,669	207,091	101,240
	장애인체육회	750,000	675,394	26,406	48,200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경상북도체육진흥조례」 제5조 ~ 제11조

＜ 국민체육진흥법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협의회 개요

- 구성인원 : 10명
- 위 원 장 : 도지사(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임 기 : 2021. 10. 15. ~ 2023. 10. 14.(2년, 1회 연임가능)
- 기 능
 -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 운 영 : 정기회(1회/년), 임시회(재적위원 1/3 요구시 등)
 -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5) : 도지사, 도 체육담당국장, 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 도 체육회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위촉직 위원(5) : 도의회 의원(1), 체육 분야 전문가(1)
체육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등